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19
----------	-----

제출연월일 : '99 10.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개정구분 : 부분개정

개정이유

-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일부 미비점과 관계 법령의 폐지 또는 제정에 따른 자구를 수정 보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동 조례를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조례운영상 불합리한 자구인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을 각각 시의회 및 시장으로 함(안 제3조등)
- 위원의 여비지급기준을 국내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함(안 별표)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중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하고, 동항 단서중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으로 하며, 동조 제2항 및 제3항중 “지방의회”를 각각 “시의회”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별표제1호서식”을 “별지서식”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단서중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지방자치단체”를 “시”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지방자치단체”를 “시”로,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제6조 제1항·제2항 및 제3항중 “지방의회”를 각각 “시의회”로 한다

제9조 전단중 “지방자치단체의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단서 및 제11조 제1항 단서중 “지방의회”를 각각 “시의회”로 한다

제13조 본문중 “별표제2호”를 “별표”로 하고, 동조 단서중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를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로 한다

별표제2호를 별표로 하여 동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제1호서식을 별지서식으로 하고, 동서식중 “안산시지방의회의장”을 “안산시 의회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지급 기준(제13조관련)

구 분	액 수
일 비	50,000원
여 비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상 부시장 상당액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 규정에 의한 위원은 <u>지방의회</u>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을 <u>지방자치단체장</u>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p> <p>② <u>지방의회</u>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p> <p>③ 위원은 <u>지방의회</u>의 의장이 추천하여 <u>지방의회</u>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p> <p>④ <u>지방의회</u>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u>별표 제1호서식</u>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p>	<p>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 -----<u>시의회</u>----- -----<u>시장</u>----- -----</p> <p>② <u>시의회</u>----- ----- -----</p> <p>③ -----<u>시의회</u>----- --<u>시의회</u>----- -----</p> <p>④ <u>시의회</u>----- -----<u>별지서식</u>----- -----</p>
<p>제4조(위촉기간) ① (생략)</p> <p>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u>지방의회</u>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p>	<p>제4조(위촉기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시의회</u>----- -----</p>
<p>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당해 <u>지방자치단체</u>의 상근 직원을 겸할수 없다</p> <p>② <u>지방자치단체</u>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u>지방의회</u>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 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p>	<p>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 <u>시</u>----- -----</p> <p>② <u>시</u>----- -----<u>시의회</u>----- -----</p>
<p>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u>지방의회</u>의 의원이 위원이 된다</p>	<p>제6조(대표위원) ① ----- -----<u>시의회</u>----- -----</p>

현행	개정안
<p>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u>지방의회</u>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p>	<p>② ----- -----<u>시의회</u> ----- -----</p>
<p>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u>지방의회</u>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u>시의회</u> ----- -----</p>
<p>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u>지방자치단체의 장</u>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 ----- -----<u>시장</u> ----- -----</p>
<p>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u>지방의회</u>의 의원인 경우에는 <u>지방의회</u>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② (생략)</p>	<p>제10조(일비의 지급) ① ----- ----- -----<u>시의회</u> -----<u>시의회</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u>지방의회</u>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u>지방의회</u>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p> <p>② (생략)</p>	<p>제11조(일비의 계산) ① ----- ----- ----- ----- -----<u>시의회</u> -----<u>시의회</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p>	<p>제13조(지급기준) -----</p>

현 행		개 정 안	
<p>는 <u>별표 제2호</u>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외에는 <u>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u> (별표제2호서식)</p>		<p>--<u>별표</u>-- ----- ----- <u>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u>을 준용한다 (별표)</p>	
구 분	액 수	-----	-----
일 비	50,000원	-----	-----
여 비	<p><u>국내여비규정 “별표2” 여비지급구분표상 시·군(구)의 경우는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상당액</u></p>	-----	<p><u>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상 부시장 상당액</u></p>
<p>(별표 제1호서식) 위 촉 장</p> <p style="text-align: center;">○ ○ ○</p> <p>안산시의 결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년 ○월○일 까지 ○일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u>안산시지방의회의장(인)</u></p>		<p>(별지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p> <p>-----</p> <p>-----</p> <p>-----</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u>안산시의회의장(인)</u></p>	